

2017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제2차시험 행정법 문제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성명 :

【문 1】 울산시내의 A사거리는 사방이 왕복 2차선인 도로상에 있다. 울산광역시장은 A사거리에 차량신호기를 설치하였고, 위 신호기의 관리업무는 관련법령에 의해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甲은 밤 11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색 차량신호등을 보고 A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왼쪽 편(甲을 기준으로 9시 방향) 도로에서 역시 녹색 차량신호등을 보고 A사거리로 진입하던 乙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일 아침에는 1시간 정도 가랑비가 내렸는데, 그때 내린 빗물이 위 신호기 주요부품에 흘러들어가 위와 같은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한편, 신호기가 고장 난 시점부터 甲과 乙의 사고시점까지 약 15시간 동안 위 신호기의 오작동을 신고하는 112전화가 3통이나 접수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예산부족 및 불가항력 등을 이유로 항변하고 있다.(뒷면 법조문 참조)

- (1) 甲이 국가배상법 제5조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인용가능한가? (20점)
- (2) 甲은 위 (1)의 소송에서 울산광역시와 국가 중 누구를 피고로 할 수 있는가? (20점)
- (3) 이 사안에서 종국적(최종적) 배상책임자는 누구인가? (10점)

【문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문 3】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